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 처리 주체 및  
업무 범위 확대 등 〉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430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세 진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검토의견 .....                                                        | 3  |
| 1.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 처리 주체 및 업무 범위 확대 등 .....                              | 3  |
| 2. 신분증명서 범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                                        | 9  |
| 3. 국적취득 시점의 명확화 등 .....                                                | 13 |
| 4.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 또는 인터넷에<br>의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신설 ..... | 17 |
| 5. 관계기관 의견 .....                                                       | 2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8. 27.

(3) 회 부 일 : 2025. 8. 2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제시하는 신분증명서로서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20155호, 2024. 1. 30. 공포, 2024. 7. 31. 시행)에 따른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한편, 국적취득의 통보와 관련하여 국적법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 12. 19. 공포, 2018. 12. 20. 시행)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취득시점을 명확히 반영하고,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여 열람·발급을 하는 경우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처럼 신청인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가족관계등록관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법원부이사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로 하고, 시·읍·면의 장과 마찬가지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사무의 처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 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분증명서로서 본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 다.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야 비로소 국적취득의 통보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
- 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하여 인터넷 열람·발급 또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본인에 한정함(안 법률 제11950호 부칙 제3조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 처리 주체 및 업무 범위 확대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함)에 관한 등록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관이 될 수 있는 대상을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은 법원부이사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로 확대하고(안 제4조의2제1항),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사무 처리는 가족관계등록관도 처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4조의2제3항).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를 <u>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u> (이하 “가족관계등록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의2(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① -----<br>-----<br>-----<br>-----<br><u>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법원부이사관, 법원서기관</u> -----<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읍·면의 장의 등록                                                                                                                           | ③ -----<br>-----<br>-----                                                                                                  |

| 현행                                                                                                                            | 개정안                                                                       |
|-------------------------------------------------------------------------------------------------------------------------------|---------------------------------------------------------------------------|
|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의3, 제29조, 제31조, 제38조부터 제43조까지,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한다. | -----<br>----제14조, 제14조의3, 제18조-----<br>-----<br>-----<br>-----<br>-----. |

## 나. 검토의견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4조 의2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3조<sup>1)</sup> 및 제4조<sup>2)</sup>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은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를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고(제1항),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의3, 제29조, 제31조, 제38

- 
-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권한의 위임) ①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는 이 법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라 함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에 있어서 군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③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 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사무처리) 제3조에 따른 등록사무는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의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 등을 접수하거나 수리한 신고지의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조부터 제43조까지,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항).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 준용 규정 ]**

| 준용 규정  | 내용                                                                            |
|--------|-------------------------------------------------------------------------------|
| 제3조제3항 | 대법원장은 등록사무의 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읍·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                        |
| 제5조    | 시·읍·면의 장은 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등록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 수행 불가 |
| 제11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절차 등                                                    |
| 제14조   | 증명서의 교부 청구 및 절차 등                                                             |
| 제18조   | 등록부의 정정                                                                       |
| 제22조   |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처리 절차                                                     |
| 제23조의3 | 첨부서류의 전자적 확인                                                                  |
| 제29조   |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부존재 또는 부지 시 처리 절차                                            |
| 제31조   | 말로 하는 신고 등                                                                    |
| 제38조   | 신고의 최고                                                                        |
| 제39조   | 신고의 추후 보완                                                                     |
| 제40조   | 기간경과 후의 신고                                                                    |
| 제41조   |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
| 제42조   |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
| 제43조   | 신고불수리의 통지                                                                     |
| 제109조  | 불복의 신청                                                                        |
| 제110조  | 불복신청에 대한 시·읍·면의 조치                                                            |
| 제111조  | 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
| 제114조  | 신고서류 등의 송부                                                                    |
| 제115조  | 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
| 제116조  | 각종 보고의 명령 등                                                                   |

그런데 재외국민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관은 대법원장이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권한의 부여 및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관이 될 수 있는 직급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난이도가 높은 법률적 업무 등에 관하여는 중장기적 업무경험이 필요한 상위 직급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 제14조의3<sup>3)</sup>에서는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서는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에 관련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무인증명서발급기 운영상 처리주체가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sup>4)</sup>.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현행 재외공관의 증명서 발급체계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 구분                                  | 방문/우편   | 무인증명서발급기 | 비고       |
|-------------------------------------|---------|----------|----------|
| 주로스앤젤레스<br>총영사관                     | 가족관계등록관 | 종로구청장    | 불일치해소 요망 |
| 주상하이총영사관,<br>주싱가포르대사관,<br>주말레이시아대사관 | 가족관계등록관 | 종로구청장    | 불일치해소 요망 |

이에 개정안은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여 가족관계등록관이 될 수 있는 대상을 법원부이사관부터 법원주사보까지로 확대하고 이들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가족관계등록관도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사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를 위한 가족관계등록관 제도 및 무인증명서발급기 운영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개정안의 내용 중 가족관계등록관은 법원행정처장의 지정을 받도록 한 부분은 유사 입법례(현행 「부동산등기법」<sup>5)</sup> 등에서 등기사무 처리에 있어 등기관의 경우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 등에 비추어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직급을 법원부이사관까지 확대한 부분은 사법보좌관의 경우 난이도가 높은 법률적 업무에 있어 전문성 있는 처리를 위해 법원이사관까지로 직급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족관계등록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원공무원을 부이사관까지 포함시키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sup>6)</sup>, 2026년 7

5) 「부동산등기법」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자[이하 “등기관”(登記官)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상업등기법」 제8조(등기사무의 처리) ① 등기사무는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서기관·등기사무관·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을 포함한다) 중에서 지방법원장(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등기관”이라 한다)이 처리한다.

6) 「법원조직법」 제54조(사법보좌관) ①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1. 「민사소송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

월 현재 법원 전체 인원 중 법원부이사관은 71명으로<sup>7)</sup>, 법원부이사관의 경우 현재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또는 사법보좌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으로 보할 수 있는 직급에 해당하는 점<sup>8)</sup> 등을 고려할 때 재외국민 등록사무 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근무하게 하거나, 재외공관에 파견<sup>9)</sup>하는 것이 적정한지를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sup>10)</sup>.

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2. 「민사집행법」(같은 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집행문 부여명령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제소명령절차,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3.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4.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와 한정승인취소·포기취소 신고의 수리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5.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이혼절차에서의 가정법원의 사무

「사법보좌관규칙」 제12조(직급) 사법보좌관은 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 7) 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참조

- 8) 「법원조직법」 제10조(각급 법원 등의 사무국) ③ 고등법원과 특허법원의 사무국장 및 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補)하고, 고등법원 국장, 지방법원 사무국장(제1항에 규정된 사무국 외의 국을 두고 있는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제외한다) 및 국장, 가정법원 사무국장, 행정법원 사무국장, 회생법원 사무국장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의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보하며,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 또는 등기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1조(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법원행정처장·차장·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법원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법원이사관·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이사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이사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법원서기관·시설부이사관·시설서기관·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 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8조(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조의 2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등록사무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한다.

- 10) 가족관계등록관 현황 :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10명, 파견 재외공관 8명(법원행정처 제출 자료)

## 2. 신분증명서 범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시해야 하는 신분증명서의 범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하는 내용임(안 제23조제2항).

| 현행                                                                                                                                                                                                                                                           | 개정안                                                                                                                                                   |
|--------------------------------------------------------------------------------------------------------------------------------------------------------------------------------------------------------------------------------------------------------------|-------------------------------------------------------------------------------------------------------------------------------------------------------|
| 제23조(신고방법) ① (생략)<br>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 제23조(신고방법) ① (현행과 같음)<br>② -----<br>-----<br>-----<br>----- <u>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u> -----<br>-----<br>-----<br>-----<br>-----<br>-----<br>----- |

| 소속                | 구분    | 직위(직급)    | 파견 재외공관     |
|-------------------|-------|-----------|-------------|
| 재외국민<br>가족관계등록사무소 | 파견 8명 | 법원서기관(4급) | 뉴욕 총영사관     |
|                   |       | 법원서기관(4급) | 일본국 대사관     |
|                   |       | 법원서기관(4급) |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
|                   |       | 법원서기관(4급) | 호치민 총영사관    |
|                   |       | 법원사무관(5급) | 오사카 총영사관    |
|                   |       | 법원사무관(5급) | 칭다오 총영사관    |
|                   |       | 법원사무관(5급) | 시드니 총영사관    |
|                   |       | 법원주사보(7급) | 후쿠오카 총영사관   |

| 현행                     | 개정안             |
|------------------------|-----------------|
|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br>-----.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23조<sup>11)</sup>에서는 출생신고 등 이 법에 따른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되(제1항),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항).

현행법에서는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중 주민등록증의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민등록법」 상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관한 규정이 신설<sup>12)</sup>(2023년 12월 26일 개정, 2024년 12

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신고방법) 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서 “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주민등록법」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 21.>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현행법에도 주민등록증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함께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교통법」 개정<sup>13)</sup>으로 운전면허증을 대체할 수 있는 신분확인 수단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별도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법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에 관한 근거가 없는 상태임.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전단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3) 「도로교통법」 제85조의2(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증의 확인 등) ① 시·도경찰청장은 제85조, 제85조의3, 제86조, 제87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전면허소지자의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증(제1항에 따른 모바일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제87조의2·제92조·제93조·제95조제1항·제139조 및 제152조에서 같다)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신분의 확인 방법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 및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확인하는 경우

2.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3.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에 연계된 운전면허정보를 이용하여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사진·주소·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으로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⑤ 모바일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의 발급 및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개정안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도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신고사건 처리 등에 있어 신분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의 원활한 처리 및 국민 편익 증진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3. 국적취득 시점의 명확화 등

####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국적법」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년 12월 19일 일부개정)에 따른 국적취득 시점(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은 때 →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을 반영하여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94조제1항 및 제95조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u>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u>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4조(귀화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① -----<br>-- <u>귀화허가를 거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u> -----<br>-----<br>-----.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u>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u>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95조(국적회복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 ① -----<br>- <u>국적회복허가를 거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u> -----<br>-----<br>-----<br>----. <u>다만, 그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u> |

| 현행                                                                                                                              | 개정안                                                                                             |
|---------------------------------------------------------------------------------------------------------------------------------|-------------------------------------------------------------------------------------------------|
| <p>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p> | <p><u>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u></p> <p>② -----<br/>-----<br/>-----, &lt;단서 삭제&gt;</p> |

## 나. 검토의견

개정 「국적법」(법률 제15249호, 2017년 12월 19일 일부개정)<sup>14)</sup>에서는 종전에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14) 「국적법」(법률 제15249호, 2017년 12월 19일 일부개정, 2018년 12월 20일 시행)

| 「국적법」 개정 전                                                                        | 「국적법」 개정 후                                                                                                                                                                                          |
|-----------------------------------------------------------------------------------|-----------------------------------------------------------------------------------------------------------------------------------------------------------------------------------------------------|
|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는 <u>법무부장관이 그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u>   | 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u>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u>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
|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는 <u>법무부장관이 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u> |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u>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u>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던 것을,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또는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국적취득 시점을 변경하였음.

그런데 현행법 제94조<sup>15)</sup>에서는 법무부장관의 「국적법」 제4조에 따른 귀화허가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제95조<sup>16)</sup>에서는 법무부장관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개정 「국적법」(법률 제15249호, 2017년 12월 19일 일부개정)상 국적취득 시점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 두 법률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국적법」 개정(법률 제15249호, 2017년 12월 19일 일부개정)에 따른 국적취득 시점(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은 때 →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을 반영하여 귀화 또는 국적회복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절차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

15)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16)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 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한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있어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시점이 반영되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른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4.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 또는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신설

#####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른 전산제적부 및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발급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 또는 인터넷·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는 내용임(안 법률 제1195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법률 제1195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br><u>&lt;신 설&gt;</u> | 법률 제1195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br>제3조(제적된 전산호적부 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7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른 전산제적부(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미지 전산제적부를 포함한다),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발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

| 현행 | 개정안                                                                                                                                                                                                                                              |
|----|--------------------------------------------------------------------------------------------------------------------------------------------------------------------------------------------------------------------------------------------------|
|    | <p><u>열람 청구 또는 발급 신청은 본인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u></p> <p><u>②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른 전산제적부(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부칙 제3조에 따른 이미지 전산제적부는 제외한다) 및 법률 제843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에 관한 등본·초본의 발급에 대하여도 적용한다.</u></p>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 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법」을 폐지하고,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제정된 법률인바,

법률 제정 당시 부칙17)에서는 제9조18)에 따른 등록부는 종전의 「호적

1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8435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호적법은 폐지한다. 다만, 2008년 8월 31일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회복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사람의 신고 및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통보는 종전의 「호적법」 제109조, 제109조의2, 제110조 및 제112조의2를 적용하되, 위 「호적법」 조항들을 적용할 때 「호적법」 제15조는 이 법 제9조로, 본적은 등록기준지로 본다.

제3조 (등록부의 작성 등) ① 이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는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작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③ 대법원규칙 제1911호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전산 이기된 호적부

법」 제124조의3<sup>19)</sup>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를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작성하고,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에 따라 편제된 전산호적부와 이미지 전산호적부는 법률 시행과 동시에 제적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제7항<sup>20)</sup>에서는 본인 또는 배

(이하 “이미지 전산호적부”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된다. 다만, 신고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제적자에 대하여 새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등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은 이 법 제10조에 따른 최초의 등록기준지로 본다.

⑤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따른 신고 등이 있었으나 제2항에 따라 제적된 후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새로 작성된 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적을 부활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부활한 호적에 그 기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 ①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가족관계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제10조의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등록기준지

2. 성명·본·성별·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3.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4. 가족으로 기록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성명·성별·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9) 舊 「호적법」 제124조의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의 작성 등) ①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호적은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호적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 호적을 축적하여 호적부로 하고,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 제적(除籍)을 축적하여 제적부로 한다.

③ 제2항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법원의 장의 승인을 얻어 시·읍·면의 사무소외의 장소에 보관·관리할 수 있으며, 전쟁·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제2항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는 시·읍·면의 장이 보관·관리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읍·면의 장 외의 자가 보관·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 또는 제적부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이를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 또는 폐쇄 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함)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sup>21)</sup>에서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고, 그 발급 신청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sup>22)</sup>에서는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2013. 7. 30. 법률 개정(법률 제11950호)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등록부등의 열람 또는 증명서 발급 제도가 도입된 것임.

개정안은 종전의 「호적법」에 따른 전산제적부 등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발급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 또는 인터넷·무인증명서

---

2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제적된 전산호적부에 대하여도 그 열람 또는 발급에 있어 전자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에 개정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5.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재외국민도 해외에서 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개정 「국적법」상 국정취득 시점 및 국적취득통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반영하여 실무상 혼선의 우려를 차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신뢰성·정확성 제고, 국민의 예측가능성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무부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익 도모를 위한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관련 내용은 정책적 판단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
|--------------|
| 문 의 처        |
| 02)6788-5058 |

# 참고 1

## 법원 일반직공무원 직급표

| 계급               |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직군               | 직렬       | 직류       |           |           |             |                 |                 |            |             |            |             |
| 사<br>법<br>행<br>정 | 법원<br>사무 | 법원<br>사무 | 법원<br>관리관 | 법원<br>이사관 | 법원<br>부이사관  | 법원<br>서기관       | 법원<br>사무관       | 법원<br>주사   | 법원<br>주사보   | 법원<br>서기   | 법원<br>서기보   |
|                  | 등기<br>사무 | 등기<br>사무 |           |           |             |                 | 등기<br>사무관       | 등기<br>주사   | 등기<br>주사보   | 등기<br>서기   | 등기<br>서기보   |
|                  | 조사<br>사무 | 조사<br>사무 |           |           |             | 조사<br>서기관       | 조사<br>사무관       | 조사<br>주사   | 조사<br>주사보   | 조사<br>서기   | 조사<br>서기보   |
|                  | 전산       | 전산       |           |           | 전 산<br>부이사관 | 전 산<br>서기관      | 전 산<br>사무관      | 전 산<br>주 사 | 전 산<br>주사보  | 전 산<br>서 기 | 전 산<br>서기보  |
|                  | 통계       | 통계       |           |           |             |                 | 통계<br>사무관       | 통계<br>주사   | 통계<br>주사보   | 통계<br>서기   | 통계<br>서기보   |
|                  | 법원<br>경위 | 법원<br>경위 |           |           |             |                 | 경위<br>사무관       | 경위<br>주사   | 경위<br>주사보   | 경위<br>서기   | 경위<br>서기보   |
|                  | 사서       | 사서       |           |           | 사서<br>부이사관  | 사서<br>서기관       | 사서<br>사무관       | 사서<br>주사   | 사서<br>주사보   | 사서<br>서기   | 사서<br>서기보   |
|                  | 통역       | 통역       |           |           |             | 통역<br>서기관       | 통역<br>사무관       | 통역<br>주사   | 통역<br>주사보   | 통역<br>서기   | 통역<br>서기보   |
|                  | 행정<br>사무 | 행정<br>사무 |           |           |             |                 | 행정<br>사무관       | 행정<br>주사   | 행정<br>주사보   | 행정<br>서기   | 행정<br>서기보   |
|                  | 속기       | 속기       |           |           |             |                 | 속기<br>사무관       | 속기<br>주사   | 속기<br>주사보   | 속기<br>서기   | 속기<br>서기보   |
|                  | 보안<br>관리 | 보안<br>관리 |           |           |             |                 | 보안관리<br>사무관     | 보안관리<br>주사 | 보안관리<br>주사보 | 보안관리<br>서기 | 보안관리<br>서기보 |
|                  |          | 보안       |           |           |             |                 | 보안<br>사무관       | 보안<br>주사   | 보안<br>주사보   | 보안<br>서기   | 보안<br>서기보   |
|                  | 병기       | 병기       |           |           |             |                 | 병기<br>사무관       | 병기<br>주사   | 병기<br>주사보   | 병기<br>서기   | 병기<br>서기보   |
|                  | 비상<br>대비 | 비상<br>대비 |           | 이사관       | 부이사관        | 서기관             |                 |            |             |            |             |
| 기술<br>심리         | 기술<br>심리 | 기술<br>심리 |           |           |             | 기술<br>심리<br>서기관 | 기술<br>심리<br>사무관 |            |             |            |             |
| 기술               | 기술       | 기술       |           |           |             | 기술              | 기술              |            |             |            |             |

|           |          |          |  |           |            |           |             |            |             |            |             |
|-----------|----------|----------|--|-----------|------------|-----------|-------------|------------|-------------|------------|-------------|
|           | 조사       | 조사       |  |           |            | 조사<br>서기관 | 조사<br>사무관   |            |             |            |             |
|           | 기계       | 기계       |  |           |            |           | 기계<br>사무관   | 기계<br>주사   | 기계<br>주사보   | 기계<br>서기   | 기계<br>서기보   |
|           | 전기       | 전기       |  | 기술<br>이사관 | 기술<br>부이사관 | 기술<br>서기관 | 전기<br>사무관   | 전기<br>주사   | 전기<br>주사보   | 전기<br>서기   | 전기<br>서기보   |
|           | 화학       | 화학       |  |           |            |           | 화학<br>사무관   | 화학<br>주사   | 화학<br>주사보   | 화학<br>서기   | 화학<br>서기보   |
| 기술        | 토목       | 토목       |  |           |            |           | 토목<br>사무관   | 토목<br>주사   | 토목<br>주사보   | 토목<br>서기   | 토목<br>서기보   |
|           | 건축       | 건축       |  | 기술<br>이사관 | 기술<br>부이사관 | 기술<br>서기관 | 건축<br>사무관   | 건축<br>주사   | 건축<br>주사보   | 건축<br>서기   | 건축<br>서기보   |
|           | 조경       | 조경       |  |           |            |           | 조경<br>사무관   | 조경<br>주사   | 조경<br>주사보   | 조경<br>서기   | 조경<br>서기보   |
|           | 방송<br>통신 | 방송<br>통신 |  |           |            |           | 방송통신<br>사무관 | 방송통신<br>주사 | 방송통신<br>주사보 | 방송통신<br>서기 | 방송통신<br>서기보 |
|           | 보건       | 간호       |  |           |            |           | 보건<br>사무관   | 보건<br>주사   | 보건<br>주사보   | 보건<br>서기   | 보건<br>서기보   |
|           |          | 식품<br>위생 |  |           |            |           |             |            |             |            |             |
|           |          | 조리       |  |           |            |           |             |            |             |            |             |
|           | 환경       | 환경       |  |           |            |           | 환 경<br>사무관  | 환경<br>주사   | 환경<br>주사보   | 환경<br>서기   | 환경<br>서기보   |
|           | 관리       | 관리       |  |           |            |           | 관리<br>사무관   | 관리<br>주사   | 관리<br>주사보   | 관리<br>서기   | 관리<br>서기보   |
|           |          | 운전       |  |           |            |           |             |            |             |            |             |
| 관 리<br>운영 | 건축<br>운영 | 건축<br>운영 |  |           |            |           |             | 건축운영<br>주사 | 건축운영<br>주사보 | 건축운영<br>서기 | 건축운영<br>서기보 |
|           | 기계<br>운영 | 기계<br>운영 |  |           |            |           |             | 기계운영<br>주사 | 기계운영<br>주사보 | 기계운영<br>서기 | 기계운영<br>서기보 |
|           | 전기<br>운영 | 전기<br>운영 |  |           |            |           |             | 전기운영<br>주사 | 전기운영<br>주사보 | 전기운영<br>서기 | 전기운영<br>서기보 |